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11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11.18.

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인숙】

### 가. 제안이유

자원봉사캠프 정의,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며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)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(안 제5조제3항)
-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2)
-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캠프 정의,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며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제5호)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 신설
- (안 제5조제3항)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
- (안 제12조의2)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규정 신설하고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 정비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캠프를 신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보다 많은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